

『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』 신규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0조(할인판매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단은 <u>지정된 금융기관 및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계좌출금방식으로 구매하는 개인 구매자에게</u> 모바일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10조(할인판매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 <u>다음 각 호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지정된 금융기관 및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계좌출금방식으로 구매하는 개인 구매자에게</u> 모바일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2. 제1호 이외 할인판매는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 협의 하에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· 조문정비</p> <p>· 조문정비</p> <p>· 모바일상품권 할인판매 규정 명시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1조(환불·교환 및 선물하기) ① (생략)</p> <p>② 모바일상품권은 액면가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상품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물할 수 있다.</p> <p>1. 개인은 금융기관 및 간편결제사 앱을 통하여 상품권을 개인에게 선물할 수 있으며, <u>개인이 선정한 상품권의 수령한도는 월 50만원으로 하되,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<u>기업 법인은 운영기관의 별도 시스템을 통하여 상품권을 개인에게 선물할 수 있으며, 법인이 선정한 상품권의 수령한도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1조(환불·교환 및 선물하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법인은 운영기관의 별도 시스템을 통하여 상품권을 개인에게 선물-----.</u></p> <p>2. <u>개인 및 ----- ----- ----- 수령한도는 통합하여 관리하되, --.</u></p>	<p>· 조문정비</p> <p>· 선물수령한도 통합 관리(개인+법인)</p>